[사 건 명] 행심 2015-23

학교폭력에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6.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등』 처분을 취소하고 『교내 봉사 5일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로 변경하여 처분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6.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급교체』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 개요

가. 청구인 ○○○은 ◇◇고등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폭력에 대해 2015. 6. 1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2015. 6. 18. 청구인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서면사과, 학급교체,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5. 6 23.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5. 7.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개최 통지를 개최일 하루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보받았고, 자치위원회 회의의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어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에 대한 폭력을 인정하지만 우발적인 점, 청구인과 ◕◕◕은 평소 친하게 지낸 점, 청구인은 고3이라 학급교체가 될 경우에 생물, 화학 수업을 참여하지 못하여 수능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Ⅲ.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자치위원회 개최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담임교사를 통하여 여러 번 전화와 문자를 통하여 개최 사실을 알렸으며, 자치위원회 회의진행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폭행이 우발적인 폭행이라기보다 상습적인 폭행이고, 피해자 우선보호를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5. 6. 9. 경 ◕◕◕에게 카톡으로 욕설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5. 6. 10. 경 자기주도적 학습시간에 ◕◕◕이 떠들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의 얼굴 부분과 다리를 폭행하였으며, 휴지를 ◕◕◕을 향하여 집어 던지고, 귀가 도중 ◕◕◕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위원장은 이 법 제13조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은 자치위원회 개최 통지를 개최일 하루 전에 등기우편으로 통보받았고, 자치위원회 회의의 진행상의 문제점이 있어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만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자치위원회 개최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점, 학폭위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개적인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진술의 필요성이 보이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따로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행위는 청구인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여러 증거에 비추어볼

때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중에 대하여 살펴보면,

◕◕◕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위험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보호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지만, 청구인이 서면사과를 통하여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대하여 학급교체를 할 경우에 고3학생으로서 생물, 화학 수업을 듣지 못하여 수능준비에 심히 어려움을 겪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이후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학습태도가 많이 좋아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중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처분은 서면사과, 학급교체 및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의 처분으로 병과되어 있는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만 병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은 청구인이 ◕◕◕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에게 협박 또는 보복행위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인 서면사과, 학급교체 및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1일의 처분을 『교내봉사 5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1일로』 감경하여 처분 한다.

라)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순 없다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가중한 만큼, 처분을 감경하기로 한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는 만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